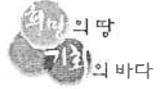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용재결서 정보 송부(남양주별내주변도로건설공사<9차>, 12수용0158)

1. LH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남양주별내주변도로건설공사<9차>, 12수용0158)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정보(2012. 5. 25)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2.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는 수용재결 사건번호(12수용0158),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보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없이 바로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LH공사 ☎ 031-738-88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결서 주문의 보상금은 위 사업수용 토지 등의 전체보상금이며, 개인별보상금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수용재결서 정보 1부. 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

주무관

홍상기

행정사무관

송재원

서기관

신영방

국장

전결 2012. 5. 25.

이상복

협조자

시행 사무국-12119

(2012. 5. 25.)

접수

우 463-75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공사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31-696-2235

팩스번호 031-726-3776

/ sghong56@mltm.go.kr

/ 대국민 공개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재 결 서

수 용 재 결 : 도 시 계 획 시 설 사 업
(남양주별내주변도로구리시구간건설공사<9차>)

2012. 5.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번 호 : 12수용0158호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 구리시구간 건설사업 <9차>)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 유 자 : 김억배 외 15명

관 계 인 : 없음

재 결 일 : 2012. 5. 25.

이 건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3,248,190,480원으로 한다.
2. 수용의 개시일은 2012. 7. 18.로 한다.

이 유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 구리시구간 건설사업 <9차>)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구리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률 제91조에 따라 구리시장이 이를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1-131호, 2012. 1. 4.)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과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여 2012. 2. 15. 재결신청하였다.

나. 적법성 판단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같은 법률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소유자 등의 주장

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기간 중에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본다.

- 1) 온도종은 누락된 전주를 보상하여 줄 것을,
- 2) 온도종은 잔여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줄 것을,
- 3) (주)SH리싸이클링, 온도종, 김진길은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시행자의 의견

위 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을 본다.

- 1) 누락이 확인되어 평가 후 별도 협의할 예정이다.
-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사항이다.
- 3) 보상금은 보상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산정한 적정가격이다.

3. 위원회의 판단

가. 온도종이 누락된 전주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에 의하면 전주는 누락이 확인되어 사업시행자가 별도 협의를 하겠다고 하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보상하도록 하되,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후 재결신청을 하는 때에 이를 다루기로 한다.

나. 온도종이 잔여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지목의 변경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당사자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3,248,190,480원(개인별 보상금내역은 별지 제1,2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

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

4. 수용의 개시일

수용의 개시일은 본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2. 7. 18.로 한다.

보 상 금 내 역 (지 장 물)

리셀르특판 귀하

[별지 제2목록] 남양주 별내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사업.9차(12수용0158)
수용토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보 상 액		소 유 자		관 계 인	
				단 가/ 금 액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134-4	영업물품(주방시설등) [1식]	1.0 x1/1	일식 1,550,000	라셀르특판	(동)경기 구리시 갈매동 134-1 경기 구리시 갈매동 134-1			
물건합계	1건			1,550,000		- 이 하 여 백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상

위원

김해룡

위원

정태용

위원

홍두표

위원

이영신

위원

송용찬

위원

이재봉

위 정본입니다.

2012. 5.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간사 이 상

